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 추진절차, 교육 방법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제5조의7 및 제5조의8로 하고,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 갈음·유예)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물리적방호교육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 유관기관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2.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파견 근무 등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교육 갈음·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물리적방호 교육 평가) 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의6(물리적방호 교육 기록 및 비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7(종전의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7(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종류 및 수량”을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으로 한다.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 운송 일정, 송화인·운송인·수화인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다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송화인, 운송인, 수화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국제운송방호에 필요한 서류

③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2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으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5조의3”을 “시행규칙 제5조의7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5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5조의7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조의5 관련)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지침

- 가. 양적(量的)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 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

가.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 1) 운송경로, 운송횟수 및 운송수단
- 2) 조직 및 임무
- 3) 보고체계
- 4) 그 밖에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나. 운송물에 관한 사항

- 1) 운송 핵물질
- 2) 운송 핵물질의 포장 및 적재
- 3) 그 밖에 운송물에 관한 사항

다.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 1) 방호조직 및 임무
- 2) 물리적방호 조치
- 3) 그 밖에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라.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1) 방호비상 대응조직 및 임무
- 2) 방호비상 대응조치
- 3) 방호비상 대응체계
- 4) 사보타주로 인한 방사선영향의 최소화 방안
- 5) 분실·도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
- 6) 그 밖에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최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검사 연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최초검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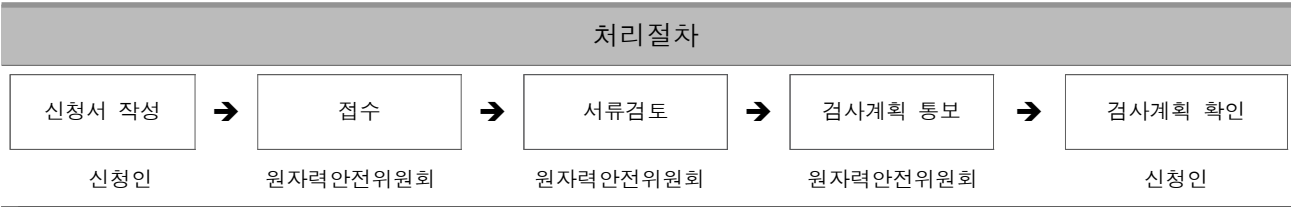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	------------



운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운반 연월일		
	발송지 및 도착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부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2부 3.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2부 4. 운반경로 및 예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2부 5. 운반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2부 6.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2부 7. 그 밖에 운반방호에 필요한 서류 2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수출 90일, 수입 30일, 경유·환적 3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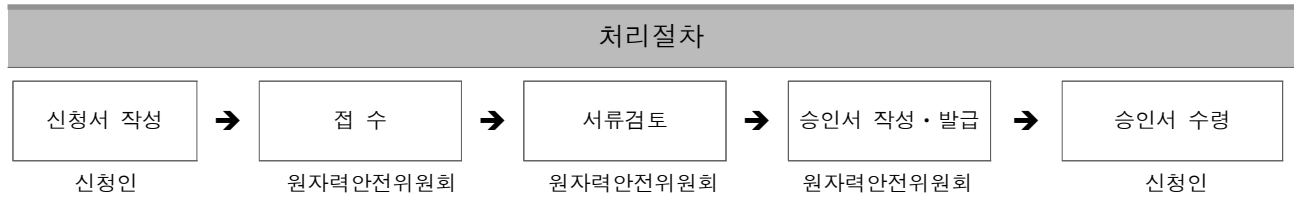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국제운송방호계획서 2부 2. 국제운송 일정, 송화인·운송인·수화인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2부	수수료 없 음
------	---	------------



제 호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송화인/운송인/수화인:
6. 운송핵물질:
7. 운송구간/운송일정:
8. 승인조건:
9. 승인날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변경사항>

[illegible]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본사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승인서작성·발급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내용	승인번호		승인날짜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 신고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확인 신고인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국제운송 연월일		
	발송지 및 도착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부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2부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2부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2부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2부 6.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2부 7. 그 밖에 국제운송방호에 필요한 서류 2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국제운송방호 검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3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시간 및 내용)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u><신 설></u>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시간 및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3항----- -----. ② 교육 추진절차, 교육 방법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 갈음 · 유예)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물리적방호 교육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 물리적방호 관련 유관 기관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2.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외 파견 근무 등으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신 설>

<신 설>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교육 갈음·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물리적방호 교육 평가)

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의6(물리적방호 교육 기록

및 비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과 시설
2. 교육장비: 탐지 및 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 방호 관련 장비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 장소별 또는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 효율적 교육수행 방법 등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한다.

제5조의7(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3부

2.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설 현황 1부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물
리적방호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 (생 략)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신
청서에는 물리적방호규정등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검사의 신
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 ~ 6. (생 략)

제5조의8 (현행 제5조의4와 같음)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① (현
행과 같음)

<삭 제>

③ -----

-----.

1. (현행과 같음)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
에 관한 서류

3. ----- 포장
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수단-
--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

④ (생략)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

2. 운송 일정, 송화인·운송인·수화인의 임무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

<신 설>

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
미한 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
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
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송화인, 운송인, 수화인의 성
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
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의 성명)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
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부

<신 설>

<신 설>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3. 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 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 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

<신 설>

한 서류

6.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
체계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국제운송방호에 필
요한 서류

③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
는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제8
조의5 관련)

1.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지침
 - 가. 양적(量的)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항은 양적으로 기술할 것
 - 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
2.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
 - 가.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 1) 운송경로, 운송횟수 및 운송수단
 - 2) 조직 및 임무
 - 3) 보고체계
 - 4) 그 밖에 운송 일반에 관한 사항
 - 나. 운송물에 관한 사항
 - 1) 운송 핵물질

- 2) 운송 핵물질의 포장 및 적재
 - 3) 그 밖에 운송물에 관한 사항
- 다.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 1) 방호조직 및 임무
 - 2) 물리적방호 조치
 - 3) 그 밖에 운송 중인 핵물질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사항
- 라.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1) 방호비상 대응조직 및 임무
- 2) 방호비상 대응조치
- 3) 방호비상 대응체계
- 4) 사보타주로 인한 방사선영향의 최소화 방안
- 5) 분실·도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 방안
- 6) 그 밖에 운송 중인 핵물질의 방호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1. 25.>

최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사업(대표자)
		주소 (상선·동선)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 연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최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접수서류 1.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2부 2. 핵물질 등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서류 2부 3. 핵물질로 활용이전 후 원자력시설물의 취합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2부 4. 전자의 운영계획에 관한 원자력시설 검출제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에 관한 서류 2부	수수료 원 0
---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접수

→

서류검토

→

검사계획 수립

→

검사계획 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단, 앞면 80g/㎡(직중량)]

운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운반 연월일		
		발송지 및 도착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장소 표지 및 적함지에 관한 서류 2부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용출, 중화능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2부 3. 운반장소 표지, 이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2부 4. 운반 중 안전계획에 관한 서류 2부 5. 이상계획 사고 및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서류 2부 6. 그 밖에 운반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2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복합지: 80g/㎡ (가중평균)]

최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성명·출생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검사 연월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최초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접수	→	서류검토	→	검사계획 검토	→	검사계획 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복합지: 80g/㎡ (가중평균)]

운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명칭		
		성명(대표자)	(성명·출생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운반 연월일		
		발송지 및 도착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반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운반장소 표지 및 적함지에 관한 서류 2부 2. 운반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용출, 중화능소 구성 등에 관한 서류 2부 3. 운반장소 표지, 이상 도착시간, 적하방법 및 운반수단에 관한 서류 2부 4. 운반장소 표지, 이상 도착시간에 관한 서류 2부 5. 운반 중 안전계획에 관한 서류 2부 6. 이상계획 사고 및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서류 2부 7. 그 밖에 운반장소에 필요한 서류 2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복합지: 80g/㎡ (가중평균)]

<신 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제1항]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수송 90일, 수입 30일, 검류·환류 3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성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2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증

첨착서류	1. 국제운송방호계획서 2부	수수료 없음
	2. 국제운송 일감, 송화장, 운송인, 수화인의 일부 및 책임이 명시된 계약서 2부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 작성·발급

→

승인서 수령

신청인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신청인

210mm×297mm(복합지:80g/㎡(가중중량))

<신 설>

국제운송보호계획 승인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illegible]

<신 설>

<신 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생년월일	
	사업소	명칭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외부서준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수수료 원.종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승인서작성·인감	→	승인서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 [별첨지 2매/원 (정확불량)]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소 명칭		
신고내용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담당부서	담당자	
	승인번호	승인날짜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외부서준	1. 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수수료 원.종
------	--	------------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검토·통보	→	확인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210mm×297mm [별첨지 2매/원 (정확불량)]

<신 설>

<신 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외5제식]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본사	영점	
		설립(대표자)	(설립일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영점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국제운송 연합일		
	발송지 및 도착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국제운송연합 조약 및 가입자의 권한 서류 2부 2. 국제운송하역은 화물물의 등록, 수량, 종류, 포장 및 포장 표시,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2부 3. 국제운송하역은 화물물의 포장, 수량, 종류, 포장 및 포장 표시,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2부 4. 국제운송을 할 때에 필요한 조항일시에 관한 서류 2부 5. 국제운송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 2부 6. 이송하는 사고 및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서류 2부 7. 그 밖에 국제운송연합에 필요한 서류 2부	수수료 원/종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단 앞지: 80g/㎡ (가중평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외7제식]

국제운송방호 검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본사	영점	
		설립(대표자)	(설립일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영점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9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원/종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